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병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12

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 강병원·김민기·이용호

김정호・양향자・조승래

강선우 • 박홍근 • 김영호

이정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·부기관장·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게 재산등록 및 공개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, 그 이하 직급의 임직원과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한 모 공기업 임직원들의 비위행위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바, 이와 같은 일 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됨.

이에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·부기관장·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제11호).

법률 제 호

##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1호 중 "공기업"을 각각 "공공기관"으로, "상임이사 및 상임감사"를 "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급 이상의 직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3조(등록의무자) ① 다음 각 호       | 제3조(등록의무자) ①       |
|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자(이하 "등록의무자"라 한다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.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. ~ 10. (생 략)            | 1. ~ 10. (현행과 같음)  |
| 1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        | 11                 |
| 법률」에 따른 <u>공기업</u> (이하    | <u>공공기관</u>        |
| " <u>공기업</u> "이라 한다)의 장·부 | <u> 공공기관</u>       |
| 기관장· <u>상임이사 및 상임감</u>    | <u>상임이사 및 상임감사</u> |
| <u>사</u> , 한국은행의 총재·부총재·  | 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   |
| 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           | 는 직급 이상의 직원        |
| 천직 위원, 금융감독원의 원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장·부원장·부원장보 및 감사,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농업협동조합중앙회·수산업협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12.・13. (생 략)             | 12.・13. (현행과 같음)   |